

평생교육책임공제 보통약관

평생교육책임공제 설명서

2024. 01. 01.



제1조(목적) 이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공제회(이하 '회'라 합니다) 사이에 피공제자가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에 의한 평생교육활동 중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공제계약에서 계약자는 본회의 회원기관으로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이어야 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피공제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등의 기관으로 합니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회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공제회의 승낙은 회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단체 영업배상책임보험(평생교육)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공제료 및 회의 보장개시) ① 회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가 청약 시에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공제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공제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가 청약 시에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5조(보험회사의 책임범위)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 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장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장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장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우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점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제(공제를 포함합	
--	--

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영업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장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6. 핵 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0.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11.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2.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근로기준법, 국민건강공제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

17.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 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8. 피보험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9.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2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7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